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4. 4. 5 선고 2023나14696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4. 4. 5 선고 2023나14696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9. 15 선고 2022가합5331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, 담당변호사 김정덕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훈

변론종결 2024. 3. 15.

판결선고 2024. 4. 5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. 9. 15. 선고 2022가합53319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251,526,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2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“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”를 삭제하고, 같은 면 제17행의 “사건 소장 부분”을 “이 사건 소장 부분”으로, 제4면 제12행과 제5면 제1행의 각 “약정서”를 각 “각서”로, 같은 면 제3행의 “증인”을 “제1심증인”으로, 같은 면 제7행의 “이 법정”을 “제1심 법정”으로, 제6면 제13행의 “증인 C가 이 법정”을 “제1심증인 C가 제1심 법정”으로, 제8면 제12행의 “보증인에서”를 “보증인 보호 대상에서”로, 같은 면 제19행의 “자료가 없는 점”을 “자료가 없고, 이 사건 각서에 의해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는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E가 아닌 C로 하는 채무인 점”으로, 제9면 제1행의 “이유 없다”를 “이유 없다(원고는, 원고가 주식회사 E에 공급한 제품을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I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고, 2020년경에는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로부터 동생인 J와 함께 16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,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2조의 1호 다목에서 보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‘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’에 관한 것으로서, 주채무자가 C인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E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, 위 주장은

이유 없다)”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현우, 판사 이도식, 판사 최은경